

COLORADO 주 대법원

대법원장실

COLORADO 주 법무부

통역사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의 법정 접근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은 Colorado 주 법원이 언어 지원 사무소(Office of Language Access, "OLA")를 통해 제공 및 임명한 통역사의 활용 및 비용 지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의 법정 절차 및 법정 업무 접근을 관리할 목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I. 정의

- I. A. **허가 통역사(Authorized Interpreter)** - 공인되고, 자격을 갖추고, 적합 또는 등록된 통역사로 OLA가 독립 계약자 또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OLA가 관리하는 활동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OLA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사람.
- I. B. **이중 언어 직원(Bilingual Staff)** - 직원 통역사가 아닌 Colorado 주 법무부 근로자로 OLA의 기준에 따른 영어 및 제2언어의 능력이 증명되고, OLA가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와 영어 외 언어로 직접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사람.
- I. C. **공인 통역사(Certified Interpreter)** - 최소 전문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통역사로 Colorado 주 법무부가 인정하는 통역사 구술 자격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고, OLA가 관리하는 공인 통역사 활동 명단에 등록되어 Colorado 주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람.
- I. D. **직원 통역사(Classified Staff Language Interpreter)** - Colorado 주 사법부 인사규정(Colorado Judicial System Personnel Rules)에 의해 고용이 관리되는 근로자로, 수행하는 업무가 부서 분류 및 보상 플랜에 포함되는 사람.
- I. E. **법정 업무(Court Operations)** - 법원 및 보호관찰(법정 절차 제외)에 의해 관리 또는 수행되는 법원 사무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중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접촉을 포함.

- I. F. **법정 절차(Court Proceeding)** - Colorado 주 법원의 조치, 항소, 기타 절차(법관 수행 사안 포함) 전 심리, 재판 또는 기타 출두 행위.
- I. G. **자격 보유 통역사(Credentialed Interpreter)** - 사용 언어 구술 능력 시험에서 최고의 자격을 인정받고, OLA의 기준에 따른 추가 요건을 충족한 통역사.
- I. H. **독립 계약 통역사(Independent Contract Language Interpreter)** - 계약에 따른 독립 계약자이거나 IRS Revenue 판결 87-41에 따른 허가 통역사.
- I. I. **통역(Interpretation)** - 한 언어의 구두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옮기는 행위.
- I. J. **법관(Judicial Officer)** - 법정 절차를 주재하도록 허가된 판사, 재판관, 치안판사 또는 수역 판정관.
- I. K. **언어 서비스(Language Services)** - 통역사, 이중 언어 직원 또는 번역 수단을 통해 보다 용이한 법정 서비스 접근을 돕는 지원 행위.
- I. L.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
- I. M. **이해관계인(Party in Interest)** - 사건 당사자, 피해자, 목격자,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 및 법적 후견인 또는 관리인, 성년 당사자의 법적 후견인 또는 관리인.
- I. N. **적합 통역사(Qualified Interpreter)** - 공인 또는 자격 보유 통역사가 없는 경우, 공인 또는 자격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육 요건 및 OLA가 제시하는 최소 구술 자격시험 점수를 충족해 법정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역사. 적합 통역사는 OLA가 관리하는 적합 통역사 활동 명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I. O. **등록 통역사(Registered Interpreter)** - 공인 또는 자격,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허가 통역사. 해당 통역사는 언어 결합에 대한 공인 또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I. P. **원격 통역(Remote Interpreting)** - 통역사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나 음성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법정 절차 또는 법정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

- I. Q. **번역(Translation)** - 한 언어의 서면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비실시간으로 옮기는 행위.
- I. R. **피해자(Victim)** - 범죄 행위 혐의의 피해자, 피해자가 지명한 사람, 법적 후견인, 보호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직계 가족,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모 및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

II. 통역사 임명

II. A. **법정 절차** - 1964년 민권법 제6장(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 1968년 각종 범죄 단속 및 길거리 치안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Safe Streets Act") 및 행정명령 제13166호(65 Fed. Reg. 50121, 2000년 8월 16일)에 따라, 법원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법정 절차 또는 그 부수 절차 진행 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배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피고인과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간 준비기일(pre-trial conference) 등 법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법정 출두 또는 절차 연기 논의 직전에 탄원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법관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원활화.
2. 의뢰인과 대법원장 지침(Chief Justice Directives, "CJD") 04-04 및 04-05에 따라 임명된 국선변호인 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3. 가정법원 촉진 및 중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법정 의무 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인과의 소통 원활화.
4. 결정 전 법정 보조 목적으로 지시 또는 수행되는 검토 및 수사 종결.

II. B. **비(非)이해관계인** - 법원은 재량으로 법정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II. C. **법정 업무** - 법원 직원은 본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자가 법정 업무 접근을 모색하는 경우, 이중 언어 직원 또는 허가 통역사의 직접 또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통역 서비스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서비스는 유형, 수단, 중요성, 의사소통 기간에 관해 OLA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